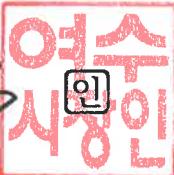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수시장 2023.7.11


여수시 조례 제1896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96호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이라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 문란, 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외국으로 이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6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① 의원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연구(검토)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자문·연구(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자문·연구(검토)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자문·연구(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연구(검토)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자문·연구(검토)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
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③ 위원회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